

조정조항

ICC 조정 규칙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다양한 상황 및 요구를 반영한 아래의 조항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당사자들은 선택한 조항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예컨대, 당사자들은 조정 이외의 분쟁해결 절차의 사용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당사자들은 조정 및 / 또는 중재 절차의 언어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.

각 조항의 하단에는 당사자들의 특수한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조항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주석이 부기되어 있습니다.

조정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불분명한 문구는 불확실성과 지연을 발생시키며, 이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가 방해받거나 더 나아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킬 때에는, 적용되는 법령상 이러한 조항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A 조항 : ICC 조정규칙을 사용하는 옵션

당사자들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언제라도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ICC 조정규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.

주석 : 당사자들은 본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언제라도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. 본 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, 이러한 조항의 존재를 통하여 언제라도 조정이나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, 위 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1인 또는 복수의 당사자들은 ICC 국제 ADR 센터에 해당 절차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B 조항 : ICC 조정규칙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

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당사자들은 분쟁을 ICC 조정규칙으로 회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고려하기로 합의한다.

주석 : 본 조항은 A 조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,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로 하여금 분쟁을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1인 또는 복수의 당사자들은 ICC 국제 ADR 센터에 해당 절차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본 조항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바로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으나,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조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자 할 때 적절할 수 있습니다.

C 조항 : 필요한 경우 중재절차의 병행을 허용하면서 분쟁을 ICC 조정규칙으로 회부할 의무

(x)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당사자들은 분쟁을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에 우선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.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개시는 어느 당사자가 아래 y 호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

(y)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, 동 중재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1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

주석 : 본 조항은 분쟁을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본 조항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.

또한, 본 조항은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거나 합의된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. 이는 ICC 조정규칙 제 10 조 제 2 항의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.

본 조항은 ICC 중재를 분쟁의 종국적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본 조항은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중재, 사법 절차나 다른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D 조항: 분쟁을 ICC 조정규칙으로 회부한 후 필요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의무

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당사자들은 분쟁을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.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[45] 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, 이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, 동 중재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1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

주석: C 조항과 마찬가지로, 본 조항은 분쟁을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다만, C 조항과 달리 본 조항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합의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표준 조항에서는 45 일의 경과를 제시하고 있으나, 당사자들은 문제되는 계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.

D 조항은 ICC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와 병행하여 사법, 중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CC 조정규칙 제 10 조 제 2 항의 기본 입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.

C 조항과 마찬가지로 D 조항은 ICC 중재를 분쟁의 종국적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위 조항은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중재, 사법 절차나 다른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긴급중재인 조항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

당사자들은 C 조항 및 D 조항에서 긴급중재인 조항의 적용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
C 조항 및 D 조항

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하는 바에 따라 C 조항 또는 D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:

긴급중재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

D 조항

1. 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 조항의 적용을 희망하고,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회부가 가능함을 명시하기를 희망한다면, D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:

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[45] 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자들이 [45] 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 만료 전에 ICC 중재 규칙에 명시된 긴급중재인 조항에 따른 긴급 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
2. 당사자들이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긴급중재인 조항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라면, D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:

당사자들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ICC 중재규칙에 명시된 긴급중재인 조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.